

#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태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41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4월 3일

발 의 자 : 김태수, 김기덕, 김광수, 이광성,  
최정순, 김경영, 유정희, 김정환,  
송아량, 이동현, 송정빈 의원  
(11명)

## 1. 제안이유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책무가 있으며, 시장에게는 구청장이 이러한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가 있음.

특히, 폐기물 처리사업이 능률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청소인력의 후생복지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바, 청소인력의 후생복지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행하는 청소인력의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)”을 “(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청소인력의 후생복지 지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) ① 「폐기물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2조(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청소인력의 후생복지 지원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